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6. 1.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9년 5월 21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9년 5월 26일
- 라. 상정일자 : 제14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년 5월 27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가. 개정이유

-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의 본격적인 개장에 따라 대림운동장 시설 사용의 우선권을 우리 구에 소재한 축구팀·테니스팀 등 구민에게 줌으로써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거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공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추가조정하여 정함(안 제5조)
 -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 영등포구 대표 축구팀 및 테니스팀이 대림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등포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림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전용사용료 납부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8조)

- 대림운동장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제2항 별표3)

구 분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 고
대림운동장 축구장	40,000	52,000	11월 ~ 2월 07:00~18:00	1팀 기준 (2시간)
			3월 ~ 10월 07:00~19:00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8,000	10,400	07:00~22:00	1면 기준 (2시간)

- 개인사용료와 더불어 전용사용료의 납부시기도 사용허가 신청 시로 규정함(안 제8조 제4항)
- 대림운동장 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9조)
-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 영등포구 대표 축구선수 및 테니스선수의 연습을 위한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함.
 - 초등학생 이하와 영등포구 축구연합회 및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단체는 100분의 30을 감면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타 자치구를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신설된 별표 3의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는 2002년부터 제정·시행된 「5·18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에 제9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할 것과,
- 별표2 비고 제6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하는 개정사항을 추가하며,
- 안 별표3 비고 제4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신설된 별표3의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는 2002년부터 제정·시행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9조 제2항 제1호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로
- 별표2 및 별표3의 비고란 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로 한다.

5. 審査結果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12 호
----------	--------------

제안년월일 : 2009. 5. 27
제 출 자 : 송수희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 신설된 별표3의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는 2002년부터 제정·시행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9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 별표2 및 별표3의 비고란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9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 별표2 및 별표3의 비고란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사용료의 감면)①생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제 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p> <p>[별표 2]</p> <p>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별표 3]</p> <p>4.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제9조(사용료의 감면)①생략</p> <p>② ----- ----- -----.</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p> <p>[별표 2]</p> <p>6. ----- ----- -----.</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 -----.</p> <p>[별표 3]</p> <p>4. ----- ----- -----.</p>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 -----.</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2 호
----------	---------

제출연월일 : 2009.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의 개장에 따라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우리구 소재 축구팀·테니스팀 및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시설사용료 징수운영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추가·조정하여 정함(안 제5조)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2. 영등포구 대표 축구팀 및 테니스팀이 대림운동장 축구장 및 테니스장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 (추가)
3. 영등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3의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 (추가)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나. 대림운동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규정을 추가.(안 제8조, 안 제9조)

- 1) 사용료 규정

구 분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 고
대림운동장 축구장	40,000	52,000	11월 ~ 2월 07:00~18:00	1팀 기준 (2시간)
			3월 ~ 10월 06:00~19:00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8,000	10,400	06:00~22:00	1면 기준 (2시간)

2) 감면 규정을 신설·추가(안 제9조)

- 가)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
- 나) 영등포구 대표 축구 및 테니스
- 다) 초등학생 이하 (30% 감면)
- 라) 영등포구 축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등록 팀 (30%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 2)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09. 3. 27 ~ 4. 15, 20일) 결과 : 의견별첨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영등포구 대림동현대3차 (아)201동1905호 이 상 연 영등포구 테니스 연합회장 윤 을 수</p>	<p>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관련</p> <p>○ 대림테니스연합회에 운영권 위탁 요청</p>	<p>○ 미반영</p> <p>- 영등포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6조 제4항 및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6조 제 1항에 의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 특정단체에 위탁 처리는 불가 함</p>
<p>영등포구 대림동현대3차 (아)201동1905호 이 상 연 영등포구 테니스 연합회장 윤 을 수</p>	<p>제8조(사용료징수) 제 3항 [별표3] 관련</p> <p>○ 사계절 사용 가능한 락커룸과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에 사용료를 유료화 하는 것은 부당하니 무료사용 요구</p>	<p>○ 미반영</p> <p>- 서울시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외체육시설의 대부분이 휴게실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우리구와 비슷한 시설 수준의 타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하였음</p>
<p>영등포구 대림동현대3차 (아)201동1905호 이 상 연</p>	<p>제8조(사용료징수) 제 3항 [별표3] 관련</p> <p>- 테니스장 운영시간을 21:00→22:00으로 조정 요망</p>	<p>○ 반영</p> <p>- 대상 시설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 이용시간을 21:00로 단축코자 하였으나, 구 지역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22:00로 동일하고 직장인들의 퇴근과 귀가 시간을 고려하여 반영</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등포구 대표 축구팀 및 테니스팀이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영등포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사용료는”을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료는”으로 하여,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된 자가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
6. 영등포구 대표 축구선수 및 테니스선수가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대림운동장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이하 사용료
2. 영등포구 축구연합회 및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단체의 사용료

별표 1의 시설명란 중 “도림2동”을 “도림동”으로 하고, 위치란 중 “도림2동”을 “도림동”으로 하며, “문래2동”을 “문래동”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을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전용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을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으로 하여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림운동장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 고
대림운동장 축구장	40,000	52,000	11월 ~ 2월 07:00~18:00	1팀 기준 (2시간)
			3월 ~ 10월 06:00~19:00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8,000	10,400	06:00~22:00	1면 기준 (2시간)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 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4.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제 4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고,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 ----- ----- -----</p>
<p>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p>	<p>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 -- 16조에 따라 ----- ----- ----- -----</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되 기타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p> <p>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p> <p>1. (현행과 같음)</p> <p>2. 영등포구 대표축구팀 및 테니스팀이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3. 영등포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생략)</p>	
<p>제6조(사용시간) ① (생략)</p> <p>1.~ 2. (생략)</p> <p>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2. (생략)</p>	<p>제6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 각 호와 ----- 1.~ 2.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p>	<p>제7조(시설의 개방) ----- - 제6조에 따른 ----- ----- ----- -----</p>

현행	개정안
<p>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삭제>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u>별표 2</u>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u>제2항의 사용료</u>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표 2 및 별표 3</u>에서 ----- -----.</p> <p>③ <u>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u>는 <u>별표 4</u>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④ <u>제2항 및 제3항의 사용료</u>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된 자가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u> 6. <u>영등포구 대표 축구선수 및 테니스선수가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u>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대립운동장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초등학생 이하 사용료</u> 2. <u>영등포구 축구연합회 및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단체의 사용료</u>
<p>③ (생략)</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9,131㎡	수영장, 폴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대림3동 780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양평동 체련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구장 2면
대방천 체련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도림2동 배드민턴장	도림2동 265	320㎡	배드민턴장 3면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 (문래2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축구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 (양평1동)	5,300㎡	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족구장 2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 (양평2동)	17,448㎡	족구장 1면, 축구장 3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 (도림2동)	540㎡	농구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2동 유수지	12,105㎡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1,450㎡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2,670㎡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9,131㎡	수영장, 폴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대림3동 780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양평동 체련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구장 2면
대방천 체련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도림동 배드민턴장	도림동 265	320㎡	배드민턴장 3면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 (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축구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 (양평1동)	5,300㎡	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족구장 2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 (양평2동)	17,448㎡	족구장 1면, 축구장 3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 (도림동)	540㎡	농구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동 유수지	12,105㎡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1,450㎡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2,670㎡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현행	개정안
----	-----

[별표 2]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제목 이하 생략)

<신설>

[별표 3]
전용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제목 이하 생략)

[별표 2]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제목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3] 대림운동장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분	평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운영시간	비고
대림운동장 축구장	40,000	52,000	11월 ~ 2월 07:00~18:00	1팀 기준 (2시간)
			3월 ~ 10월 07:00~19:00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8,000	10,400	07:00~21:00	1면 기준 (2시간)

비고

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4.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고,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제목 이하 현행과 같음)